통지번호 : <u>제 000626호</u> (육군 현역병) 입영통지서 (열람용)			
성명	권준석	생년월일	2003년 02월 20일
주소	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55 208동 1604호 (신림동, 관악산휴먼시아)		
병적지	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55 - 208동 1604호 층 (신림동, 관악산휴먼시아)		
입영부대	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	모이는장소	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381-12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
입영일시	2024년 04월 01일 14:00	군사특기	기술행정병(장갑차조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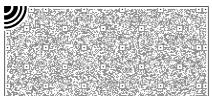
병역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통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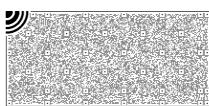
2024년 02월 22 <mark>기울기방병 서울지방병무청종무청장인인</mark> 민원기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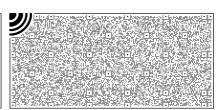
유의사항
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, 「병역법」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시까지 인적사항(성명, 연령, 주소 등)을 병무청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합니다.
- 2. 입영여비(35,300원)는 입영 후 귀하의 금융계좌(나라사랑카드 발급자는 카드 금융계좌)로 입금되며, 입영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병무청의 입영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여비를 재 산정하여 입금하여 드립니다.
- * 입영여비 지급 안내문









- ※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무단으로 복사, 위/변조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증명서의 검증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이 가능하며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

- · 입영 시에는 ① 입영통지서 ②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③ 나라사랑카드(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) ④ 운전면허증(해당자에 한함) ⑤ 자격·면허증 사본(접수마감 이후 신규 취득한 사람만 해당. 다만, 공군은 전체 자격증 원본 지참(특기분류 진행 시 필요)/ 해군은 해당 없음) ⑥ 간단한 비상약품(복용중인 내복약은 처방 전) ⑦ 소액 현금(필요시 1~2만원내외)
- ※ 만일 신분증 미지참시 본인확인 곤란으로 입영거부 될 수 있습니다.
- · 입영 시 두발은 스포츠형(삭발금지)으로 단정하게 하시고, 복장은 간소복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
- · 입영 전에 ① 군 입영 휴학처리(재학생의 경우) ② 인터넷 사이트(유료)를 해지하시고(본 통지서 복사본으로 활용가능), 금융채무 불이행 (구 신용불량자)자는 신용회복 신청 (www.ccrs.or.kr / ☎1600-5500)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· 입영 후 신병 교육 기간에도 주말·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 사용 가능하니 휴대전화, 충전기 (단. USB형이 아닌 일체형으로 준비)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하며, 세부 품목은 각 군이나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일부 물품은 입영 시 지참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지참 가능여부를 사전에 입영부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지참이 불가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.

<u>현역병 선발취소 및 입영일자 연기 신청</u>

○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민원서류(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, www.mma.go.kr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현역병 선발취소 신청

- 1.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 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워하는 경우
- 2. 가족의 위독·사망 등 가사정리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천재· 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
- 3. 각 군의 장교·부사관·병에 지원하여 수험·수험결과를 기다리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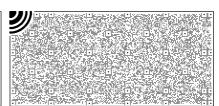
- 입영일자 연기

- 1. 위 현역병 선발취소 신청 사유 1~2번에 해당하는 경우
- 2. 동반입대병 선발자의 입영일자가 연기된 경우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 자에 함께 입영하고자 할 경우
- 3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이 어렵다고 지방청장이 인 정하는 경우









※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무단으로 복사, 위/변조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증명서의 검증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이 가능하며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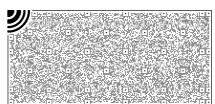
입영하기 전 건강관리 및 귀가

-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영 후 7일 이내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.
- 질병사유 귀가시 치유기간에 따른 후속조치
 -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 3월 미만
 - · 귀가 재신체검사 비대상
 - · 다시 입영을 희망하여 재입영신청을 하는 경우 : 재입영 통지(다만, 치유 기간 경과일로부터 3월 이내 같은 특기 소요가 있을 때)
 - ※ 재입영 신청 :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가능 (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), www.mma.go.kr)
 - · 다시 입영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재입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: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
 -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 3월 이상 또는 치유기간 없음
 - · 18세자: 귀가 재신체검사 비대상,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
 - ·19세 이상자 : 치유기간 경과 후 또는 즉시 귀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
 - ※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자로서 다시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: 재입영 통지(단, 신체검사일로부터 3월 이내 같은 특기 소요가 있을 때)
- * 귀가예방 안내문 보기
- * 현역병 입영 유의사항 안내문 보기









※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무단으로 복사, 위/변조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증명서의 검증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이 가능하며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찾아가는 병무청 운영 등 기타사항

○ 고충·불만 민원 및 거동불편 민원 해결을 위하여 '찾아가는 병무청'을 운영합니다.

현역복무중인 사람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민원

신경 •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분야 반복 귀가자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, 기타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 등

※ 신청방법: 병무청 홈페이지 → 민원마당 → '찿아가는 병무청'

○ 입영대상자를 위한 입영문화제 행사와 부대가는 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영문화제 일정 : <u>블로그 보기</u> 부대 가는 길 : <u>안내문 보기</u>

○ 6.25 전사자 유가족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.

설문지 바로가기 : 한글 파일(hwp), ms워드 파일 ※ 작성 후 입영부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


